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관련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여비)’ 와 대비될 수 있도록 조 제목 수정(안 제2조)
  -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4조)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세분화(안 제5조)
    -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제한(2항 신설)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3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지급기준)”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의원(다음부터”를“(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른”을 “출장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기준) ① 영동군의회 (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의원 (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생략)</p> <p>제4조(여비)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u>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현지 교통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u></p> <p>제5조 (<u>의정활동비 지급 제한</u>)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u></p>	<p>제2조(<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u>)</p> <p>① ----- --(<u>이하 “의회”라 한다</u>)의원(이하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여비) ① ----- ----- <u>출장하</u> <u>는 때에는</u> ----- ----- ----- <u>&lt;후단</u> <u>삭제&gt;</u></p> <p>② <u>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u></p> <p>제5조 (<u>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u>)</p> <p>① ----- ----- <u>제2조부터 제4</u> <u>조까지</u>----- <u>의정활동비 및 월</u> <u>정수당, 여비</u>----- -----</p>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접거하고 접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	---

###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